

인천지방법원 2021. 10. 15 선고 2020나6731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항소인 한국주택금융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우송
담당변호사 강덕환, 이동기

피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하
담당변호사 이호석
변 론 종 결 2021. 8. 27.
판 결 선 고 2021. 10. 15.
제1 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7. 15. 선고 2019가단24416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B, C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2018. 7. 13.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B,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18. 7. 19. 접수 제6224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이유의 맨 앞부분에 아래와 같이 ‘1. 기초사실’을 추가하고, 제1심판결 2쪽 5행의 ‘1. 원고의 주장’을 ‘2. 원고의 주장’으로, 2쪽 16행의 ‘2. 판단’을 ‘3. 판단’으로 각 고치며, 4쪽 14행의 ‘3. 결론’ 이하 부분을 아래 결론으로 대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5. 13. B과 보증원금을 86,400,000원으로 하는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B은 같은 날 위 보증약정을 담보로 D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96,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이후 B이 위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하자, 원고는 D은행의 이행청구에 따라 2018. 9. 14. B을 대위하여 이를 상환한 다음, B과 그 배우자인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40809호로 구상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원고는 C에 대하여는 일상가사대리에 따른 연대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2019. 3. 15. ‘B과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9,738,978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B과 C은 공동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18. 7. 19. 접수 제62243호로 피고에게 2018. 7. 13.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을

1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B, C은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한 부동산으로서 그 시가는 295,000,000원 정도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무자를 C, 채권최고액을 220,000,000원으로 하는 중소기업은행 명의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그 외에도 B, C은 I은행, J은행, 기업은행, 한국장학재단 등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K에 대한 각 신용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제1심판결 2쪽 8행의 ‘부담하고’를 ‘부담한다.’로 고치고, 그 다음부터 9행까지를 삭제하며, 2쪽 10행부터 1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그런데 B, C은 원고가 B과 신용보증약정을 함으로써 구상금채권 발생의 기초가 된 법률관계가 성립한 이후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는바,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또한 말소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 2쪽 17행의 앞 행에 ‘가.’항으로 다음의 내용을 추가하고, 그 이하의 ‘가.’항은 ‘나.’항으로, ‘나.’항은 ‘다.’항으로 각 고친다.『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B, C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특정한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서 이는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 제1심판결 3쪽 8행의 ‘따라서’부터 1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따라서 사해행위에 대한 피고의 악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판결 4쪽 2행의 ‘고려하면’ 다음에 ‘피고의 입장에서 볼 때’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인식, 판사 이대로, 판사 이혜선

